#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70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 : 임오경 • 윤준병 • 맹성규

한민수 · 박상혁 · 김재원

박 정・위성곤・부승찬

임미애 · 서영교 · 조계원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 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약자도 장애인과 같이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관람권 보장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과 노약자는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스포츠 경기 예매시스템 활용 등에 있 어서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 마련을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법률 제 호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중 "장애인"을 "장애인·노약자"로, "보장을 위한특별지원"을 "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노약자의"로, "장애인이 장애인이"를 "장애인·노약자가 장애인·노약자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 츠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노약자의 범위, 예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 제18조의3(장애인 · 노약자의 스 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 포츠관람권 보장) ① -----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 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 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 ----장애인·노약자의-----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 -----장애인·노약자가 장애 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인·노약자가-----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 정적 · 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 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신 설> ②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 인 ·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 게 스포츠경기를 관람할 수 있 도록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좌석 예약체 <신 설> 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 노약자의 범위, 예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한다.